

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부과/시간방문주차권 시행 안내

거주자우선주차장의 부정주차 방지를 위해 **부정주차 요금을 부과**하고, 평일 낮시간대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유료 **시간방문주차권제**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
□ 부정주차 요금 부과란?

거주자우선주차장 미배정되어 **주차권한이 없거나 방문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'부정주차' 차량으로 단속하여 견인하거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함.**

※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고객의 차량·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우리공단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주셔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견인되거나 부정주차요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.

□ 부정주차 요금 부과 시행

○ 시행일 : 2014. 11. 01.부터

○ 부과 대상 : 견인불가 차량(1톤 이상 화물, 15인승 이상 승합 및 기타 견인불가 차량)

※ 앞으로 견인 가능 차량까지 부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.

□ 부정주차 요금 부과 기준

○ 부과근거 : 주차장법 제9조제3항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제1호

○ 부과요금 : 12,000원(1구획당 1회 기준)

※ 산출근거 : 2,400원(600원×4시간) + 9,600원(2,400원×4)

※ 부정주차 발견 시 이미 4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4시간 주차요금과 4배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며 이후 계속 주차 시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과 가산금 추가 부과함.

시간방문주차권 이용(시행일: 2014.11.01.)

◆ 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

◆ 주차료: 600원(1구획, 1시간 기준)



◆ 이용방법

① 인터넷(www.eparking.mfmc.or.kr) 또는 스마트폰(www.m.eparking.mfmc.or.kr)으로 접속 후 방문주차 신청

② 이용할 동/구간과 이용시간(1·2·3시간권) 선택(이용 가능구간의 여유구획수 확인)

③ 요금결제(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 결제)

◆ 유의사항: 주차료 미납, 방문주차시간 미준수 시 부정주차로 간주 단속됨(견인 등 불이익)

□ 문의처 : 080-376-1100(24시간 상황실)

2014. 10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